

2024년 바이오산업 유공자 표창 계획 공고

1. 시상 개요

□ 목 적

- 바이오분야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·시상함으로써 바이오 기업인의 사기진작 도모

□ 대 상

- 수출증대, 고용창출, 지역발전 성과를 도출하여 바이오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기업인 및 관계자(임직원 포함)
- 바이오산업 분류 코드(KS J 1009)에 따른 8개* 업종
 - * 바이오의약산업, 바이오화학·에너지산업, 바이오식품산업, 바이오환경산업, 바이오의료기기산업, 바이오장비 및 기기산업, 바이오자원산업, 바이오서비스산업
 - * (참고) <https://www.kbiois.or.kr/portal/intro/categoryInfoPage.do>

□ 시상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5점
- 수출증대, 고용창출, 지역발전 3개 부문을 각각 선정하여 시상 예정
 - * 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 표창점수가 결정되며,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규모 변동 가능

□ 시상계획

- 시상일자 : 2024. 11. 28(목) 바이오산업의 날(예정)

2. 신청(추천) 자격 및 추천제한

□ 신청 자격

-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로서,
- 바이오 분야의 수출증대, 고용창출, 지역발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·객관적으로 입증된 자
 - 단, 지역발전 부문은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인 또는 관계자만 지원 가능

□ 추천제한

-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-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 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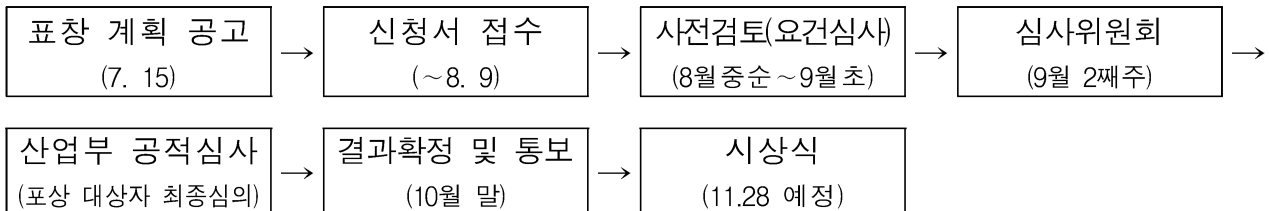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 - 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추천제한자 등 표창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,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취소될 수 있음

3. 추진절차 및 심사기준

□ 추진절차



- * 접수문건 확인 및 부도, 휴·폐업, 회계현황 등 요건 부적절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
- * 필요시 성과 관련 증빙 확인을 위한 면담조사 실시
- 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심사기준

- 심사는 정량항목과 정성항목으로 구성하고,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 도출 후 최고점 순으로 후보자 결정
- 벤처기업*의 경우, 각 부문의 세부항목 평가점수에서 5% 가산점 부여

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 등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

부문	심사기준	
	정량평가(60%)	정성평가(40%)
수출증대	·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(수입대체 포함) · 글로벌 기술이전	· 산업 발전기여 등
고용창출	· 인력 고용 · 청년 채용(34세 이하) · 고용 유지율(6개월 또는 1년 이상) ·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	· 고용창출 기여 등
지역발전	· 제조·연구 시설 투자 · R&D 투자	· 지역발전 기여 등

□ 신청서 제출

- 관련양식 : 2024년 바이오산업 유공자 표창 신청서류
- 접수처 :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팀
-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통해 접수(<https://forms.gle/MyrGoZ2wp5Ygd9z8>)
- 접수기한 : 2024년 8월 9일(금) 오후 3시까지(접수마감일 기준)
- 제출 유의사항
 -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①한글파일 (hwp) 및 ②스캔파일 (PDF) 2종류 모두 제출
 -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압축하여 업로드 (첨부파일의 최대용량은 1GB로 초과시 업로드 불가)
 - 파일명은 '2024바이오산업(신청부문)-신청자성명(소속기관명)'으로 저장
 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
- 문의처 :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 산업육성팀
(Tel) 031-628-0036, 0013 (E-mail) shkim@koreabio.org

□ 제출서류

제출서류		작성양식	비고
1	표창 신청서	서식 제1호	
2	공적조서	서식 제2호	
3	공적 약술서	서식 제3호	
4	대표자 이력서	서식 제4호	사진 jpg파일 별도 제출 포함
5	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	서식 제5호	
6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서식 제6호	
7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	-	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
8	고용·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		조회기간 '24.06.30~24.06.30
9	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	-	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

※ 자세한 사항은 [붙임2] 2024년 바이오산업 유공자 표창 신청서 제출서류 checklist 참조

□ 유의사항

-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,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
-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,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